

2020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평가 산출 방법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 성적 평가

### ○ 대학교 재학생

- 대학별 학점 만점 기준이 상이(4.0, 4.3, 4.5)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만점 성적 환산표’ 로 평가하여 환산점수 89점 이상인 자

만점 성적 환산표(서울대학교 백분위환산점수표 활용)

환산점수	4.5 만점	4.3 만점	4.0 만점
<b>100</b>	<b>4.50</b>	<b>4.30</b>	<b>4.00</b>
98	4.49 ~ 4.40	4.29 ~ 4.20	3.99 ~ 3.90
97	4.39 ~ 4.30	4.19 ~ 4.10	3.89 ~ 3.80
96	4.29 ~ 4.20	4.09 ~ 4.00	3.79 ~ 3.70
95	4.19 ~ 4.10	3.99 ~ 3.90	3.69 ~ 3.60
94	4.09 ~ 4.00	3.89 ~ 3.80	3.59 ~ 3.50
93	3.99 ~ 3.90	3.79 ~ 3.70	3.49 ~ 3.40
92	3.89 ~ 3.80	3.69 ~ 3.60	3.39 ~ 3.30
91	3.79 ~ 3.70	3.59 ~ 3.50	3.29 ~ 3.20
90	3.69 ~ 3.60	3.49 ~ 3.40	3.19 ~ 3.10
<b>89</b>	<b>3.59 ~ 3.50</b>	<b>3.39 ~ 3.30</b>	<b>3.09 ~ 3.00</b>

### ○ 신입생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상대평가) : 백분위로 평가
- 한국사영역, 영어영역(절대평가) : 등급별 감점 적용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20-68호

## 2020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문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2020년 9월 8일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 I 선발개요

#### □ 선발분야

(단위: 명, 원)

분야	사업명	대상	인원	지급액(1인)	비고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성적우수	고등학생	102	700,000	
		대학생(관내)	23	최대 2,000,000	예산 범위 내
		대학생(관외)	13		
	특기적성	초·중·고등학생	19	1,000,000	
	지역혁신인재	대학생 및 일반인	2	2,000,000	
디딤돌 장학사업	모범	중학생	40	600,000	
		고등학생	41	900,000	
		대학생	12	최대 2,000,000	예산 범위 내
	학자금원금 상환지원	대학생	30	최대 2,000,000	예산 범위 내
무지개 장학사업	장애인 면학	초등학생	48	300,000	예산 범위 내
		중학생		600,000	
		고등학생		900,000	
		대학생		최대 2,000,000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초등학생	13	300,000	예산 범위 내
		중학생		600,000	
		고등학생		900,000	
		대학생		최대 2,000,000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5	1,000,000	

※ 분야별 예산범위 내 장학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은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

- 1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 어	0	0.5	1.0	1.5	2.0	2.5	3.0	3.5	4.0
한국사	0	0	0	0.4	0.8	1.2	1.6	2	2.4

- 3 -

- 수능 성적 산출

-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환산 점수 = ( ① - ② ) ÷ ③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표준점수		131	137		53	64	69
백 분 위		93	95		75	93	95
등 급	4	2	2	3	4	2	2

-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93 + 95 + [(75 + 93) \div 2] = 272.0$

-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1.0(\text{영어영역}) + 0.4(\text{한국사영역}) = 1.4$

-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3

☞ 환산 점수 =  $( 272 - 1.4 ) \div 3 = 90.20$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교과	과목	1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국어	국어	2	91 / 77.3(16.0)	A(27)	3
수학	수학	2	97 / 77.2(18.0)	A(27)	2
영어	실용영어	2	92 / 67.5(19.9)	A(27)	2
사회	한국사	3	84 / 70.9(18.7)	B(27)	4
체육	체육	2	96 90.7( 7.5)	A(27)	
예술(음악/미술)	음악	2	92 86.4( 7.7)	A(27)	
제2외국어	일본어	3	95 / 78.3(15.4)	A(27)	2
공업에 관한교과	공업일반	2	87 / 74.4(15.8)	B(27)	
공업에 관한교과	기계일반	2	87 / 68.4(19.8)	B(27)	

①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1,445

$$\rightarrow 2 \times 91 + 2 \times 97 + 2 \times 92 + 3 \times 84 + 2 \times 96 + 2 \times 92 + 3 \times 95 + 2 \times 87 + 2 \times 87 = 1,821$$

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rightarrow 2 + 2 + 2 + 3 + 2 + 2 + 3 + 2 + 2 = 20 \quad \Rightarrow \text{환산 점수} : 1,821 \div 20 = 91.05$$

### ③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법

- 검정고시 평균점수로 평가

$$\Rightarrow \text{환산 점수} : \text{과목별 원점수의 합} \div \text{과목 수}$$

참고 자료 <신입생 성적증빙서류 및 발급안내>

**정시합격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 <https://csatscorecard.kice.re.kr>

**수시합격자** 고교생활기록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https://www.neis.go.kr>

**검정고시합격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정부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gCD=A04001&CappBizCD=13404000019&tp\\_seq=02](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gCD=A04001&CappBizCD=13404000019&tp_seq=02)

## □ 수상실적 평가

- 별지 6호(수상실적 증명서) 대신 보완서류(붙임1참조) 본인작성 후 제출
  - 본인이 참석 대회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

○ 수상실적 평가표 배점산출

- 해당 대회명칭 및 수상 종목 등수(예: 대상, 금상, 은상일 경우 은상은 3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 1인 1회만 지급하며,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규모	주최자 및 대회 기준	배 점		
		1위	2위	3위
국제	• 세계 대회	100	90	80
	• 아시아 대회	80	70	60
전국	• 세계대회 선발전 • 전국 단위 규모 대회 • 중앙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 정부, 공공기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주최 전국 대회	60	50	40
	• 전국대회 선발전 • 시도 단위 규모 전국대회 • 지역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40	30	2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단체종목의 경우 금년 대회 수상자중 1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

**붙임1**

**‘특기적성장학금’ 수상실적증명서 보완사항**

수상실적 증명서(본인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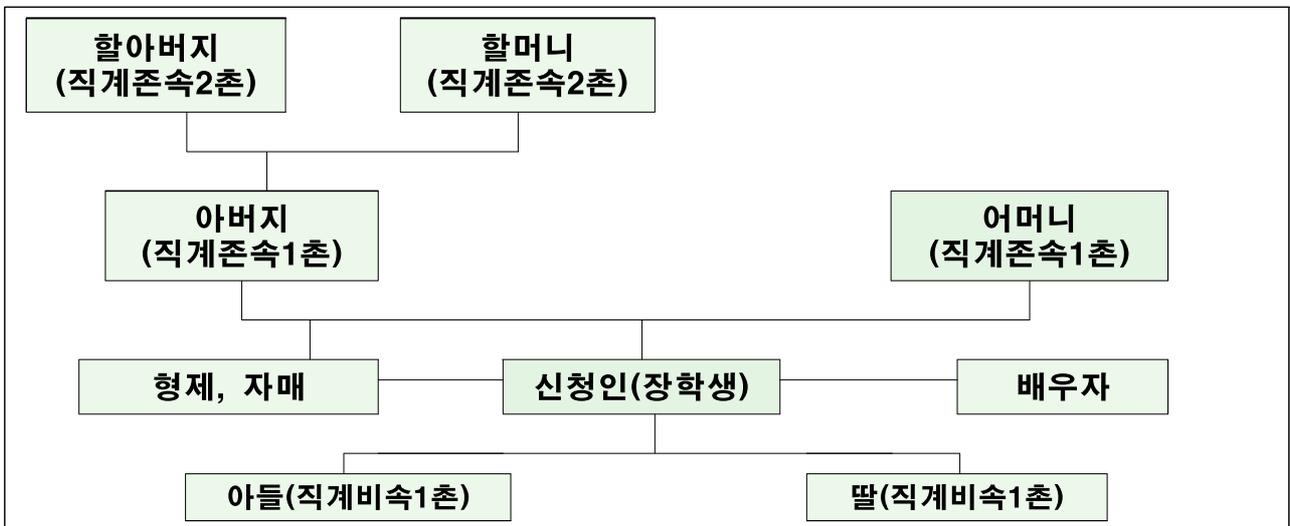


- (소득)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산정 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 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ARS) 1577-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제출

## < 소득조사 >

### 가. 가구원 수 산정

- (원칙)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구원
  - 지원 대상 학생 본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자매 제외



- (예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 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
- (기타사항)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 참고 자료

### 예시 1

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예시 2

장학금을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 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 예시 3

장학금을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4인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나. 보험료 산출방법

- (산식)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월)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맞벌이 등)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낮은 보험료)×0.5}

## 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장학생 신청 가능

[배점기준 표 : (출처) 보건복지부(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중위소득	배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65,018	84,251	103,092	122,857	142,519	160,546	180,237	201,381	220,167
70%	90		69,920	90,383	111,701	131,392	151,927	174,636	195,200	216,142	237,652
80%	85		79,924	104,090	126,909	151,927	174,636	198,402	224,298	248,116	268,311
90%	80		89,997	116,578	144,298	169,219	198,402	224,298	253,956	276,843	311,116
<b>100%</b>	<b>75</b>		<b>100,050</b>	<b>129,924</b>	<b>160,546</b>	<b>189,063</b>	<b>220,167</b>	<b>248,116</b>	<b>276,843</b>	<b>311,116</b>	<b>343,406</b>

중위소득	배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21,217	55,836	93,344	111,837	138,781	160,865	185,031	211,011	233,499
70%	90		26,904	68,412	107,524	123,752	150,605	178,276	203,127	228,554	254,909
80%	85		45,003	95,023	118,159	150,605	178,276	207,077	238,415	267,395	289,976
90%	80		66,574	107,524	140,967	172,149	207,077	238,415	274,444	298,842	333,411
<b>100%</b>	<b>75</b>		<b>85,837</b>	<b>121,735</b>	<b>160,865</b>	<b>195,462</b>	<b>233,499</b>	<b>267,395</b>	<b>298,842</b>	<b>333,411</b>	<b>368,522</b>

중위소득	배점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65,642	85,130	104,090	124,059	144,298	162,883	183,101	204,864	224,298
70%	90		70,080	91,370	113,007	133,024	153,994	177,425	198,402	220,167	242,715
80%	85		80,076	105,268	128,407	153,994	177,425	201,381	228,710	253,956	276,843
90%	80		90,383	117,289	146,236	171,908	201,381	228,710	260,770	286,647	326,561
<b>100%</b>	<b>75</b>		<b>100,076</b>	<b>131,392</b>	<b>162,883</b>	<b>192,080</b>	<b>224,298</b>	<b>253,956</b>	<b>286,647</b>	<b>326,561</b>	<b>368,580</b>

※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구분	배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100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95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90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85	기초교육급여수급자	
	80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80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준중위소득이하	75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70	환산점수 65%미만	
	65	환산점수 70%이상~80%미만	
	60	환산점수 80%이상~90%미만	
	55	환산점수 90%이상~100%이하	
※ 환산점수 10% 증가시마다 5점씩 감소			